

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기간제근로자(연구원, 고고학) 신규채용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

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서 기간제근로자(연구원/고고학) 신규채용을 위해 추진한 전형 결과에 따른 최종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21일

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

□ 최종합격자: 2명

채용분야	응시번호
연구원(익산왕궁리)	01
연구원(공주왕릉원)	06

□ 예비합격자: 3명

채용분야	응시번호
연구원(익산왕궁리)	02
연구원(공주왕릉원)	04, 05

□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안내

1. 최종 합격자는 채용에 필요한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일시/장소: 2026. 9. 1.(화) /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학예연구실

나. 제출서류

- ① 기본증명서(상세)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
- ② 채용 신체검사서 1부(2년 이내 건강검진 확인서로 대체 가능)
- ③ 반명함 사진(3×4)의 이미지 파일(jpg)
- ④ 주민등록등·초본 각 1부 ※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
- ⑤ 통장사본 1부(급여지급용 계좌)
- ⑥ 기타서류(최종학력증명서, 경력증명서, 붙임1 서류 등)

2.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안내

가. 본 채용은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,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결격사유 발생, 임용 후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비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.

나.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(2026년 11월 21일)까지이며, 유효기간 내 결원 발생 시 개별 통보 후 채용 절차가 진행됩니다.

3. 유의사항

가. 합격통보 후에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, 신체적·정신적 결함, 성범죄 관련 (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포함) 및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무가 곤란한 경우 및 제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, 소명절차를 거친 후 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.

나.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.

다. 기타 사항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채용담당자(☎ 063-836-902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. 끝.

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

본인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(기간제)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공정 채용기준 제25조(채용결격사유)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,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.

①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2026년 월 일

채용예정자: (서명)

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 귀하